

제2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
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檢 討 報 告 書

【전승관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3. 3. 27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120호로 2023년 3월 16일 전승관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3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·시행된 것에 맞추어 관내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 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와 권리증진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명 변경

나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2조)

다. 구청장 책무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4조)

라.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,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6조)

마. 평생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, 업무 및 역할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~8조)

- 바. 복지시설 확충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9조~10조)
- 사. 협력체계 구축 및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(안 제 14조~15조)
- 아. 비밀 준수의 의무 및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(안 제16조~17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: 필요 시 반영

다. 입법예고(2023.3.13. ~ 2023.3.17.)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·시행됨에 따라 관내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생애주기애 따른 복지 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와 권리증진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

○ 주요 개정내용으로

- 제명을 현행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상위법에 맞추어 정비하였고,

- 안 제1조에서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, 구청장의 책무를 정비하였으며,
- 안 제4조에서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고,
- 안 제5조에서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,
- 안 제6조에서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지원, 거주시설·돌봄 지원, 주간활동·방과 후 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,
-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법 제26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업무 및 역할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,
-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복지시설의 확충 등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,
- 안 제11조에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의 위탁 조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12조에서는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위탁시설에 대하여 지도·감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,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일부 정비하였으며,
- 안 제15조부터 안 제17조까지 의견청취, 비밀 준수의 의무, 신고 의무 사항을 신설하였음.

○ 검토 결과

-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기본계획의 수립, 지원사업 등의 조항을 구체화하였고,
- 의견청취, 신고의무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 및 인권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,
- 현재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자치법규의 법적 적합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참고 자료

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, 발달장애인의 복지 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,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.

제26조(평생교육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「교육기본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별로 「평생교육법」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,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,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2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1조(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~5 (생략)

②(생략)

제13조(문화·예술·여가·체육 활동 등 지원)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게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·예술·여가·체육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